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및 국선대리인이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보수 상한을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보수 지급 시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주요토의과제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당사자,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당사자, 참가인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3항 중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를 “참가인”으로 한다.

제16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제16조의5 제1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를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 참석 여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정 취소되거나 사임 또는 다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임된 국선대리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당사자,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당사자, 참가인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 ② (생 략)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	③ ----- ----- ----- 참 가인-- ----- -----

다.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
소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
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
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 100만
원 -----
-----.

② -----
-----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
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 참석
여부-----.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	-----------------------------------